독립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설치, 구성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설치 및 적용범위)

① 위원회는 이사회 결의로 설치한다.
②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 (권한)

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② 위원회는 독립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, 제542조의6 제1항,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(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)의 6주 전에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
제4조 (구성)

①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② 위원회는 **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**여야 한다.

제5조 (위원장)

①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한다.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③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 (소집권자)

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

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 (소집절차)

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1주간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② 단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8조 (결의방법)

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, 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③ 위원은 본인을 독립이사 후보자로 추천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9조 (부의사항)

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 1. 독립이사 후보의 추천
   2. 독립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한 사항
   3. 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
② 위원회가 전항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의결한 경우, 해당 결의는 무효로 한다.

제10조 (후보자 검토 기준)

위원회는 후보자 추천 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.

1.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경험
2. 윤리성, 독립성 및 이해상충 여부
3. 회사의 중·장기 전략과의 적합성
4. 이사회 구성의 균형 및 다양성
5.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충족 여부

제11조 (외부 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)

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청취하거나 검증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관련 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2조 (통지의무 및 재결의)

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② 전항에 따라 통지받은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③ 이사회가 위원회와 다른 결의를 하는 경우, 위원회 결의는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.

제13조 (의사록)

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4조 (간사)

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
② 간사는 HR 담당 임원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부칙(2026.10.26)

본 규정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